

서울고등법원 2021. 11. 5 선고 2021나2019789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등]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1. 11. 5 선고 2021나201978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19가합56216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영농조합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안

담당변호사 구본주, 최은령

피고, 항소인 1.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본

담당변호사 박기영

변론 종결 2021. 10. 15.

판결 선고 2021. 11. 5.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19가합562164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3. 30. 접수 제13246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 D, E, F, G, H, I, J은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들은, 피고 B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 제5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만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 제5조 제2항 제1호 다.목은 "원고가 잔금 미지급 사유 등으로 본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 원고가 말소하지 않더라도 피고 B이 말소할 의무를 지닌다."라고 정하고 있어 그 문언상 피고 B의 말소등기 의무의 발생을 계약이 해제된 경우로만 한정하는 취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앞서 본 것처럼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 의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를 전제로 하는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강민구

판사정문경

판사장정환

별지